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에게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가입비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주택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사업지연 시 해산 절차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70호, 2020. 1. 2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주택조합의 가입비등의 반환 및 해산절차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설립인가 세부내용 공고(안 제20조제8항 신설)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고하도록 함.

나.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을 5억원(개인인 경우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으로 함.

다.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마련(안 제24조의3 신설)

1)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일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에 관한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해야 함.

2)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과 동일하게 주택의 소유에 관한 조합원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해야 함.

라.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안 제24조의5 신설)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선정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안 제24조의7 및 제24조의8 신설)

1)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기 위해 예치

기관을 지정하여 예치기관과 가입비등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철회를 하지 아니하면 가입비등이 모집주체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2)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 지급(반환)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된 가입비등을 모집주체에게 지급하거나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반환하도록 함.

3) 또한,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주체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모집주체가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바.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1) 주택조합이 조기에 해산 및 사업 종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조합의 해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고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한편,

2)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청산인이 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강화 5건(주택조합 발기인 자격기준
등)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설립인가일
3. 주택건설예정지의 위치
4. 조합원수
5.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제24조의2부터 24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이란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말한다.

제24조의3(발기인의 자격기준) ① 법 제11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지역주택조합 발기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조합원 모집 신고일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을 소유 (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지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또는 2)를 충족할 것

나.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직장주택조합 발기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할 것

나. 조합원 모집 신고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할 것

제24조의4(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1조의3제8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임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업무대행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

한다)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

제24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② 법 제11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법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모집주체가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1. 법 제11조의5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할 것

2.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주택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광고를 게재할 것

제24조의6(가입비등의 예치기관) 법 제1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24조의7(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 ① 법 제11조의6제8항에 따라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기 위해 예치기관을 지정하여 예치기관과 가입비등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가입비등 예치신청서(이하 “예치신청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예치신청서와 함께 가입비등을 예치하여 줄 것을 지정된 예치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③ 모집주체는 제2항에 따라 예치신청서를 내주는 경우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하지 아니하면 가입비등이 모집주체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예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예치신청을 받은 경우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가입비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모집주체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가입비등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비등 지급(반환)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하지 아니하여 모집주체가 가입비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

2. 모집주체가 법 제11조의6제4항에 따라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⑦ 예치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가입비등 지급(반환)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된 가입비등을 모집주체(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인 신탁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하거나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⑧ 모집주체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인 신탁업자가 선정된 경우 해당 신탁업자가 예치기관으로부터 가입비등을 지급받아 자금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가입비등을 신탁업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⑨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모집주체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4조의8(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의6제8항에 따라 주

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주체에게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른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법 제12조제2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6.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조합의 해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고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는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종결 시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3.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 청산계획에 관한 사항

④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규약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의3제1항”으로 하고, 제26조의2 중 “법 제14조의2제1항”을 “법 제14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의3(중전의 제58조의2) 중 “법 제56조제3항”을 “법 제56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업무대행자가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1호	1,000		
나. 법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2호	1,000		
다.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법 제106조제2항	1,000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호	
라.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3항 제1호	500
마.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직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 제4호	1,000
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3항 제2호	200
사. 감리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06조제3항 제3호	400
아. 감리자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06조제3항 제4호	400
자.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2항 제5호	1,000
차. 법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 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1항 제1호	2,000
카. 법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 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3항 제4호의2	500
타. 법 제4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3항 제4호의3	500
파. 법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 제2호	2,000
하. 법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6조제3항 제4호의4	500
거. 법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3항 제4호의5	500
너.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법 제106조제3항	500

공급받은 경우	제5호			
더. 법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106조제3항 제6호	500		
러.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2항 제6호	1,000		
머.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1항 제3호	1,000		
버.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 제4호	1,000	1,500	2,000
서.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6조제3항 제7호	100	200	30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부터 24조의5까지,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및 별표 5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의6부터 제24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5 제2호차목부터 거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 ⑦ (생략) <u><신설></u>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설립인가일 3. 주택건설예정지의 위치 4. 조합원수 5.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⑧ (생략) <u><신설></u>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24조의2(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이란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말한다.
<u><신설></u>	제24조의3(발기인의 자격기준) ①

법 제11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 지역주택조합 발기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조합원 모집 신고일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지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또는 2)를 충족할 것
나.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할 것
- 직장주택조합 발기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할 것
나. 조합원 모집 신고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신 설>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안
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
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할 것

제24조의4(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1조의3제8항제6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임원
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보수
에 관한 사항
2.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업무대행자의 성명, 주소, 연
락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 계
획에 관한 사항
4.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조합
원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

<신 설>

제24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의
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

<신 설>

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
재지
 2.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 ② 법 제11조의5제2항제6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란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
도 사실과 다르게 선정된 것으
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
다.
 - ③ 법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모집주체가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1. 법 제11조의5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
할 것
 2.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한 날부
터 7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주택조
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광고를 게재할 것
- 제24조의6(가입비등의 예치기관)
법 제11조의6제1항에서 “대통

<신 설>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24조의7(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 ① 법 제11조의6제8항에 따라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기 위해 예치기관을 지정하여 예치기관과 가입비등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가입비등 예치신청서(이하 “예치신청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예치신청서와 함께 가입비등을 예치하여 줄 것을 지정된 예치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③ 모집주체는 제2항에 따라 예

치신청서를 내주는 경우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하지 아니하면 가입비등이 모집주체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예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예치신청을 받은 경우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가입비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모집주체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가입비등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비등 지급(반환)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하지 아니하여 모집주체가 가입비등의 지급

을 받으려는 경우

2. 모집주체가 법 제11조의6제4항에 따라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⑦ 예치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가입비등 지급(반환)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된 가입비등을 모집주체(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인 신탁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하거나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⑧ 모집주체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인 신탁업자가 선정된 경우 해당 신탁업자가 예치기관으로부터 가입비등을 지급받아 자금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가입비등을 신탁업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⑨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절차를

<신 설>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모집주체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4조의8(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의6제8항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주체에게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른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2항제10호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1.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에 관한 사항
<신설>	5.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2. 사업의 종결 시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	6.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		3.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 청산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제26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	④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규약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조합의 해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고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 법 제14조의3제1항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총회는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시공보증)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제26조의2(시공보증) 법 제14조의4제1항 -----

하는 비율 이상”이란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 -----.
제58조의3(입주자저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8조의3(입주자저축) ----- ----- 법 제56조제9항 ---- ----- ----- ----- -----.

법제처 주택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320

〈 의안 소관 부서명 〉